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1. A
	2. B
피 고	◯◯특별자치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선정자 C, D, E 및 망 F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1. 처분의 경위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6. 11. ○○특별자치시 H 전 1,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9. 6.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과 자녀인 원고들, 선정자 C, D, E 및 망 F이 있었다(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다.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9. 9. 25.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262,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10. 16.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10.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9.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35,666,100원, 지방교육세 930,420원, 농어촌특별세 3,101,400원, 합계 39,697,92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20. 2. 10.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6,031,670원, 지방교육세 939,950원, 농어촌특별세 3,133,180원, 합계 40,104,8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I을 제외한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2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종중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종중이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될 예정이다.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종중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0. 7. 15.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법률에 의한 당연취득으로, 이 사건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시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종중은 2020.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66,824,82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한편, 2020. 8.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10.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I을 제외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30. 위 상속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F은 2021. 10. 1.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K과 자녀인 선정자 L, M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종중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나 취득행위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I을 제외한 이 사건 상속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나 재산권 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87. 12. 2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선고 87누917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005조), 이와 같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밖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즉, 명의신탁 수탁자의 사망일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들에게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2019. 6. 29.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상속인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상속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 시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때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후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10.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상속인들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과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 역시 이 사건 상속인들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I을 제외한 이 사건 상속인들이 한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판사 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선 정 자 목 록

1. A
2. B
3. C
4. D
5. E
6. K
7. L
8. M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3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